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유용원 · 김예지 · 이만희
성일종 · 김소희 · 김재섭
이현승 · 김 건 · 김성원
김미애 · 강선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(軍)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,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,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

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1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(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은 제외한다)
2.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
3.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
4.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6조(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36조(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(「<u>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은 제외한다) 2. <u>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</u> 3. <u>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</u> 4. <u>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</u>

